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 동의자 수

68,253명

동의 100% 달성

동의기간 2026. 6. 11. ~ 7. 12.

현재 위원회 회부 단계

청원분야	보건의료
진행단계	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회부 → 소위원회 심사 → 전체위원회 의결 예정)
동의기간	2026. 6. 11. ~ 2026. 7. 12.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동의자 수	68,253명 —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5만 명) 충족
청원인	안○○

청원 원문 보기
petitions.assembly.go.kr

청원의 취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연간 15~24회 횟수 제한 및 1회 4만 3,850원 단일 수가 강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입니다. 본 청원은 일부 보험 사기 및 불법 브로커 문제를 명분으로 대다수 선량한 중증 환자의 '재활 골든타임'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필수 재활 인프라를 붕괴시키는 본 정책의 **즉각적인 유예 및 백지화**, 그리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법정부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정면 위반한 위헌적 규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시술을 끼워 파는 불법 사무장 병원과 소수의 악성 의료 쇼핑객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이상 청구 데이터를 표적화하고 범법자를 정밀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채 **일률적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 강제**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수단을 택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범죄를 막고자 대다수 무고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명백한 위헌적 과잉 규제입니다.

2. 생리학적 회복 주기를 무시한 횟수 제한

인체의 회복은 행정 서류의 기준에 맞춰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방십자인대 및 회전근개 파열 수술, 중증 척추 병변 환자 등은 관절낭 유착 방지와 가동 범위 확보를 위해 **초기 수주간 집중적인 수동적 도수치료가 필수**이며, 이후 생리학 회복 단계에 맞춰 점진적 가동성 확보와 능동적 재활로 이행하는 수개월의 정밀한 의학적 주기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중증도와 자가 회복 능력을 배제한 '연 15회 제한'은 중증 환자에게 **재활의 골든타임 도중 치료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충분한 재활은 영구적 강직과 만성 통증, 나아가 재수술을 유발하여 결국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3. 필수 재활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료 공동화

도수치료는 고도의 해부학적·생체역학적 지식을 갖춘 물리치료사가 체력을 소모하며 수행하는 고강도 전문 의료행위입니다. 이를 **일반 비의료 마사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 원대로 강제 통제**하면, 숙련된 치료사의 노동 강도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숙련 인력은 수가 통제가 없는 사설 체형교정원이나 프리미엄 필라테스 등 **비의료 시장으로 이탈**하고, 정작 의학적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의료기관 내부는 전문가가 사라지는 **의료 공동화**에 직면합니다. 국민은 법적·의학적 보호 장치 없이 사비를 들여 사설 센터를 전전하게 됩니다.

청원 요구사항

- 환자의 생존권과 물리치료사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즉각 유예하고 백지화**할 것.
- 정부, 임상 전문의, 물리치료사 협회, 환자 단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법정부 재활의료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
- 획일적 제한이 아닌, 환자의 **중증도 및 수술 여부에 따른 의학적 재활 타당성 기준**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보험 사기를 적발할 **민관 합동 특별조사기구**를 신설할 것.